

#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7,272,740	28,718,182
일반회계	807,392,476	24,221,774
특별회계	149,880,264	4,496,408
공기업특별회계	83,046,179	2,491,3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058,374	1,201,75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987,805	1,289,634
기타특별회계	66,834,085	2,005,023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7,521,811	225,65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42,981	166,28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590,940	47,7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15	93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37,803,437	1,134,103
주택사업특별회계	2,720,984	81,6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74,445	125,233
기반시설특별회계	1,269,453	38,084
경영사업특별회계	211,857	6,356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502,622	45,079
주차장특별회계	4,492,440	134,77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955,75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